제860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제정안 (해양수산부)	1.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 및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(신설) ○ 분리배출의무자를 구분하는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(톤/년)은 연간 수산물의 반입량(톤/년)에 품목별 폐기율(%)을 곱하여 산정 ○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가 준수해야 하는 이물질 제거기준은 산업적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리배출 단계에서 플라스틱 코팅사 등 이물질은 무게 기준 3퍼센트 이하로 제거 ▶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제3조,제4조	1.비중요
2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상장회사의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(신설) ○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▶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	1.비중요
3	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요건(신설) ○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고하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규정 ▶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5	1.비중요
4	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식품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의 세부기준(신설) ○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취소 세부기준 마련 - 부정 지정은 1차 위반시 지정취소, 부실운영은 1회 시정명령, 1년 내 재차위반시 지정취소 등 ▶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2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학교급식법 개정안 (교육부)	1.행정처분 등의 이력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(신설) ○ 학교에서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▶학교급식법 제10조의2	1.중요
6	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(환경부)	1.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강화(강화) ○ 오수처리시설에 침전분리조 설치 의무 부여 및 기준 제시, 생물반응조 최소 용적부하량 제시 ▶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	1.비중요
7	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 대상 시설 확대(강화) ○ 1일 처리용량 3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 실시 ▶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 2.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재질 및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(신설) ○ 제조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(영업정지 6개월(1차), 등록취소(2차)) ▶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4조 3.기술관리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사항 작성 등 세부 기준 마련(강화) ○ 기록해야 할 중요사항, 운영관리대장 서식, 작성 주기 및 보존기간 규정 ▶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8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특허청)	1.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(신설) ○ 발명교육법 제9조제7항에서 위임한 발명교사 인증을 위한 기준, 절차, 유효기간 등에 해당하는 조문을 발명교육법 시행령에 신설 - 발명교사 인증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발명교육 이수 등을 하여야 하며, 심사(인증평가시험)를 통해 기초 소양에 대한 역량을 검증받을 수 있음 ▶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,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	1.비중요
9	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검정기관 등의 시험·검정설비 기준 강화(강화) ○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관 등이 갖추어야 할 기준전력량계 및 허부하발생기 용량을 기존 500V급에서 1000V급으로 변경 ▶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	1.비중요
10	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공정거래위원회)	1.동일인관련자의 범위 중 친족의 범위 조정(강화) ○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동일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○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혈족 6촌,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, 인척 3촌으로 축소 * 혈족 5.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등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친족범위에 포함 ▶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1	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(강화) ○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(5종) - o-아미노페놀, 염산m-페닐렌디아민, m-페닐렌디아민, 카테콜(피로카테콜), 피로갈롤 ▶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	1.중요
12	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계속교육 강화(강화) ○ 건설현장 감리 대상 역량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, 일률적 교육시간 증가는 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, ○ 매년 필수 계속교육(7시간)을 신설하되, 신설 시간만큼 기존 3년 주기의 일반 계속교육 시간을 단축(△21시간) * 총 교육 시간은 동일하게 운영하되, 매년 최소 7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시간 배분 ▶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	1.비중요
13	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소방청)	1.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(신설) ○ 소방시설등의 최초 자체점검 시행 시기를 현행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60일로 단축 조정하고, ○ 최초점검 제도의 중요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점검 참여를 제한 및 자체점검 결과 발견된 불량사항에 대한 이행 기간 및 그 이행결과보고서의 처리 절차 등 자체점검결과 조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▶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, 제25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행정처분의 기준(신설) ○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대행 기준 위반, 점검 미참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보고서 미제출 및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시 행정처분 기준 개선 ▶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	
14	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저상버스 도입 의무화(신설) ○ '23.01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,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인 노선버스 유형은 시내·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규정하며 좌석버스를 사용하는 운행형태의 경우 도입 의무화 시기를 부칙으로 별도 규정 ▶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	1.비중요
15	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소방청)	1.고체연료 보일러 설치기준 강화(강화) ○ 화목보일러 설치기준을 마련 * 고체연료 이격기준, 연통의 자료 및 설치기준 등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.특수가연물 표지 표시사항 및 이격거리(강화) ○ 특수가연물에 대한 저장 및 취급기준을 마련 * 특수가연물 표지 표시사항 및 이격거리 기준 신설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3.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(강화) ○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기준, 시설기준, 선임자격 강화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 6.비중요 7.비중요 8.비중요 9.비중요 10.비중요 11.비중요 1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4.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(신설) ○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(겸직제한) 대상물 지정* *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5.소방계획서 내용 및 작성 주기(강화) ○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함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6.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(신설) ○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지정 * 건설현장의 면적, 용도 및 위험별 일정규모 이상의 분류기준 마련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7.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(신설) ○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*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선임 등급 이상으로 함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8.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(신설) ○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제출 대상 지정(특급 및 1급) * 특급(769개소), 1급(16,487개소)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	1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9.불시에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(신설) ○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대상 지정(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소방본부장서장이 지정하는 대상)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10.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지정, 실시방법 및 범위(신설) ○ 특별관리시설물 중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대상 규정 ○ 안전진단 등급(A~E)에 따라 진단 주기 차등화(4~6년) * 안전진단 등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(별표 7) ○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정함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, 제44조제45조 11.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(신설) ○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마련 *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,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, 전문인력 및 정비 등을 갖출 것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12.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(강화) ○ 화재안전조사 실시결과를 인터넷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3.화재예방강화지구에 준하는 장소(신설) ○ 화재발생시 막대한 인명·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준하는 대상으로 지정 ▶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	